

예 산 총 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9,762,635	10,792,873
일	반 회 계	321,670,855	9,650,125
특	별 회 계	38,091,780	1,142,74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7,125,686	513,770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1,228,486	336,854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5,897,200	176,916
	기 타 특 별 회 계	20,966,094	628,978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16,410	6,492
	새 마 을 소 득 사 업 운 영 관 리 특 별 회 계	447,410	13,422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582,778	47,483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권 자 안 정 자 금 관 리 특 별 회 계	875,655	26,269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특 별 회 계	1,494,843	44,845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1,120,111	33,603
	농 공 단 지 사 업 특 별 회 계	8,916,189	267,48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운 용 특 별 회 계	2,420,625	72,618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	1,802,680	54,080
	수 질 개 선 사 업 특 별 회 계	1,674,843	50,245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414,550	12,436	

제2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100,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69,859천원으로 한다.

제7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